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1호 2018. 7. 12.(목)

## 고 시

제2018 - 90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 고시 .....	1
제2018 - 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4
제2018 - 96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	5
제2018 - 104호	도로명주소 고시 .....	8
제2018 - 105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고시 .....	11
제2018 - 106호	『동갈화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3
제2018 - 107호	『항촌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7

## 공 고

제2018 - 757호	공시송달 공고 .....	21
제2018 - 760호	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23
제2018 - 761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	26
제2018 - 784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7
제2018 - 787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18 - 788호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39
제2018 - 789호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46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90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안내 고시

유해성 적조발생시 전해수황토살포기 및 대형바지선이 방제작업을 할 수 없는 해역에서 형망선을 이용한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로 인한 적조피해 최소화를 기하고, 일정규모의 조건을 갖춘 선박에 대한 신청의 자율화 도모 및 적조방제 사업의 성과를 거양코자 불임과 같이 적조방제용 형망선 신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1. 사업비 및 물량

- 사업비 : 150,000,000원(국비 100%)
- 사업물량 : 35척
- ※ 사업비와 사업물량은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7. 6. 29 ~ 7. 8(10일간)
-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 860-3378)

3. 자격조건

- 7톤 이상 선박으로 양식어장 및 관리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
  - 단, 7톤이하의 선박이라도 적조방제 실적이 있거나,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박은 금액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인치 이상의 양수기(동키)를 설치한 선박
-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 적조방제 민간참여자 방제 기법 교육 이수자(선주 및 선원)
- 기타사항
  - 선박의 기관을 최근에 설치하였거나, 어선검사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선박
  - 선체의 파손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선박
  - 최근에 적조방제작업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선박

4. 신청서류

- 선박서류 일체(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지정증)
- 보험가입 영수증
- 인감증명 1통
- 적조방제 기술 교육 이수증 1부
- 계약서 1부(해양보전팀 비치)
- 본인 선박이 아닌 경우 임차계약서 및 선박사용 동의서 1부.
- 기타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 설치확인 자료

5. 적조방제 선박 작업 일대

- 7톤이상~10톤급 : 550,000원
- 7톤미만 선박 : 500,000원

6. 척수의 제한

- 적조방제 선박의 가능 척수는 35척 규모로 한다.
  -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격을 검토하여 추가 선정·심의 할 수 있다.

7. 선박의 채점기준

점 수 구 분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톤 수	5톤이하	5~6톤	6~7톤	7~8톤	8~9톤	9톤이상
선 령	15년이상	10~15년	7~10년	5~7년	3~5년	3년이하
마 력	150마력이하	150~200	200~250	250~300	300~350	400마력이상

※ 단, 동일 점수시에는 톤수가 큰 선박, 선령이 적은선박 순서로 우선하여 선정한다.

8. 선박의 배정

- 고희면 갈화지선 : 7척
- 미조면 미조지선 : 25척
- 중형 황토살포기 예인선박 : 3척

9. 선박의 배정 추첨

- 중형 황토살포기 바지선을 운항할 선박은 9톤 이상의 선박을 선별하여 3척을 먼저 추첨한다.
- 자격을 갖춰 선정된 선박으로서 선주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서 추첨하여 선박을 지역별 배정하여 운항토록 한다.

남해군 고시 제2018 - 9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교량 재가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번지
6. 점용면적 : 155㎡
7. 점용기간 : 2018. 7. 2. ~ 영구(행위기간: 20178. 7. 2. ~2018.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8 - 96호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6-2번지 외 13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
  - 토공 1식
  - 배수공 : 160.5m
  - 구조물공 : 합벽식 옹벽(H=4.0~7.0m) L=75m
  - 포장공 : A=4,735㎡
  -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1,02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8. 7. ~ 2019. 1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남 해 군 공 보

(6) 제 611 호

2018년 7월 12일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남치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도로, 주택과 인접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18년까지	‘19년 추진	비 고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020	400	620	
	국비	310		310	
	도비	93		93	
	군비	617	400	217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055-860-32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고현면남 치리	156-2	대	8	8	149	박남0
2	"	156-1	도	76	76	149	박남0
3	"	157	대	114	114	69	박언0
4	"	157-4	도	52	52	국	남해군
5	"	1124-2	도	76	76	국	국(국토교통부)
6	"	158-1	도	9	9	158	조재0
7	"	159-1	도	11	11	국	남해군
8	"	166-4	도	1	1	국	남해군
9	"	166-3	전	3	3	합포구	박한0
10	"	158	대	249	249	158	조재0
11	"	167-1	잡	14	14	87	조정0
12	"	산123-5	임	1,742	1,742	737	박성0
13	"	산122-1	임	211	211	대사리	박지0
합계				2,566	2,566		

남해군 고시 제2018 - 104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1437 외 3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 해 군 공 보

(10) 제 611 호

2018년 7월 12일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143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627-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어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95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4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어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23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8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598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363-24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59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 273	20090427	독립지사 장남 윤병호선생을 기리기 위함, 창남은 설천 문의에서 출생하여 대동청년단에 가입,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랑공원에 그의 송공비가 세워져 있음
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06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83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의미함
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69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93-17	20090427	보리암, 용문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인 화방사가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17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650-11, 654-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2040-28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650-8, 654-2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2040-22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88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156-36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41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68-3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21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67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00-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15-50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517-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설로43번길 92-54	20100915	고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1195-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229번길 68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8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512번길 43-8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2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78번길 6-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68-110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41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남로247번길 40-44	20090427	당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24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95-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90, 1609-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미국마을길 33-1	20090427	미국교포들을 위해 조성한 아메리칸빌리지에 위치한 길임을 반영, 미국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남해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포들이 입주해 있음
2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0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066번길 32-7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03-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066번길 38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503-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066번길 32-5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841-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01번길 2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398-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38번길 51-21	20091023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56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356번길 29-8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59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연곡로11번길 44-31	20090427	연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38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빛담촌길 17-5	20111215	마을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빛담촌 마을의 이름을 반영

폐 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산2-3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49	20180827	신축에 의한 지번 내 일부 건물번호폐지

남해군 고시 제2018 - 105호

###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고시

유해성 적조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태세 확립과 적조피해 발생전 해상가두리시설 안전지대 이동을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하여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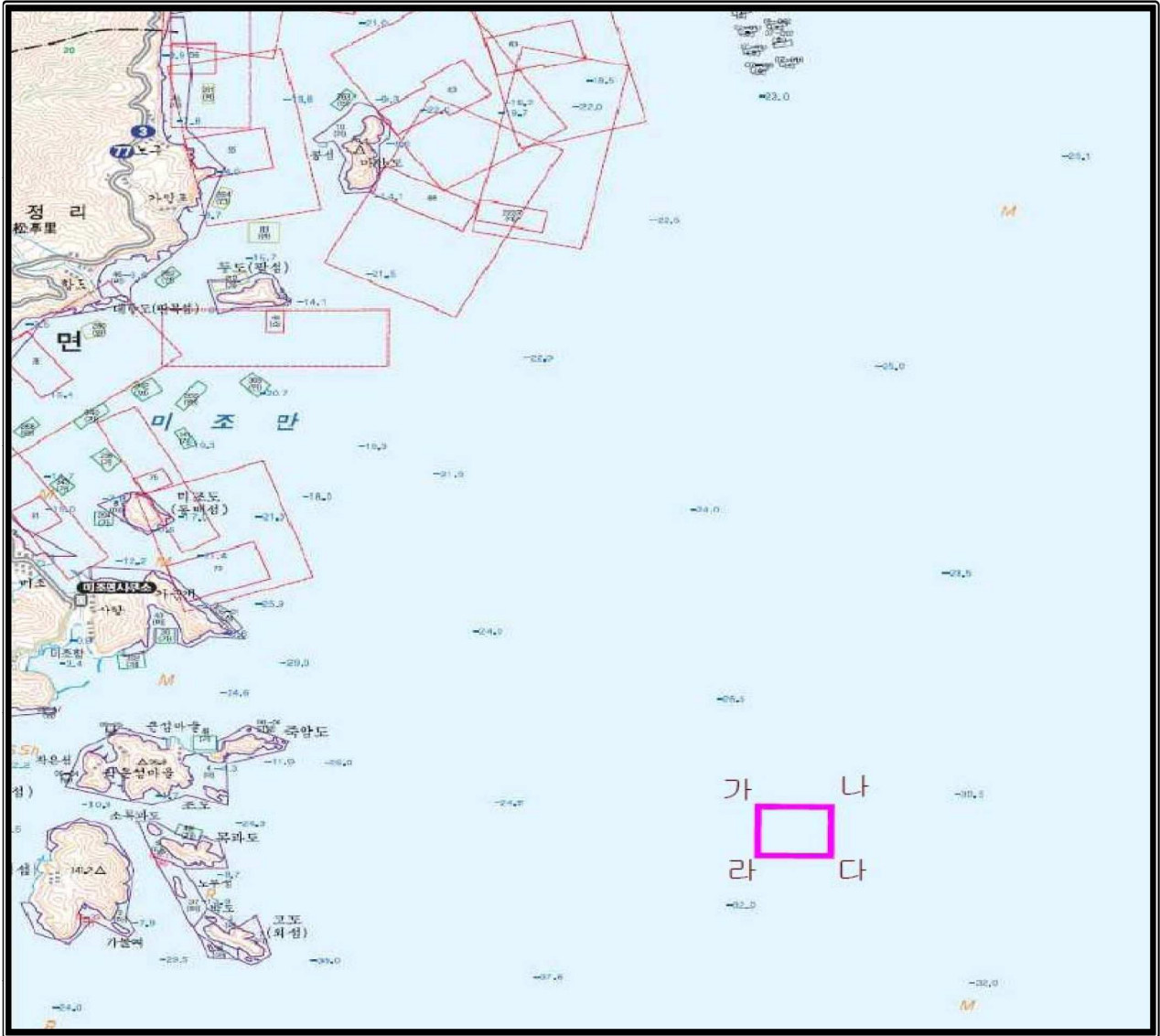
남 해 군 수

○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현황

지정목적	면적 (ha)	지정기간	위치	좌표(WGS) 및 구역 (위도,경도)	지정받은 자
적조발생시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30	2018.7.01~ 2018.10.3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미조도 부근	가.34-41-37.150, 128-06-28.923 나.34-41-37.150 128-06-52.494 다.34-41-20.925 128-06-52.494 라.34-41-20.925 128-06-28.923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역】	남해군수 (해양수산과장)

붙임 : 대피장 지정 해역도 1부

(해상가두리 적조대피장 해역도)



상기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구분	경위도(WGS)		기점간 거리(m)		비 고
	위도(N)	경도(E)	기점(구간)	거리(m)	
가	34-41-37.150	128-06-28.923	가-나	600	
나	34-41-37.150	128-06-52.494	나-다	500	
다	34-41-20.925	128-06-52.494	다-라	600	
라	34-41-20.925	128-06-28.923	라-가	500	

남해군 고시 제2018 - 106호

**『동갈화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해군 고현면 동갈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동갈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의 위치 :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동갈화 마을
4. 사업 개요
  - 지역소득증대
    - 갈화 새우 체험관 조성 (1층, 건축면적 130.40㎡)
    - 새우 체험 마당 조성
  - 역량강화사업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5. 총 사업비 : 498백만 원(국비 295, 지방비 126, 자부담 77)

6.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8년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8. 관련자료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부 사업 내역 1부.



기능 별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관 계					증감사유
	예비계획(A)		기본 및 시행계획(B)		증.감(△)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98,000		498,000	-	
o 공사비		398,000		402,143	18,143	
1) 공사비 (순 공사바자재대)		384,000		402,143	18,143	
◇ 지역소득증대		384,000		402,143	18,143	
-새우체험교육관		344,000		379,243	35,243	세부설계 결과반영
-새우체험마당		40,000		22,900	△17,100	간이시설로 변경
o 지역역량강화 (S/W)		64,000		35,000	△29,000	
○ 소프트웨어		64,000		35,000	△29,000	
-교육부분		34,000		18,500	△15,500	교육 회차 조정
-홍보부분		30,000		16,500	△13,500	어플제작 삭제 및 회차 조정
o 부대경비		50,000		60,857	10,857	
-측량설계비등		50,000		60,857	10,857	설계비 및 공감비 재산 정에 의한 증액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계획	기본 및 시행계획	증감액	비고
합 계	498,000	498,000	-	
국 비	295,000	295,000	-	
도 비	37,740	37,740	-	
군 비	88,260	88,260	-	
자부담	77,000	77,000	-	

○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계획 (A)	기본 및 시행계획 (B)	증.감(△) (B-A)	비 고
합 계	498,000	498,000	0	
○ 공사비	384,000	402,143	18,143	
1) 공사비 자재대	384,000	402,143	18,143	
◇ 지역소득증대	384,000	402,143	18,143	
새우체험교육관 조성	344,000	379,243	35,243	
새우체험마당 조성	40,000	22,900	△17,100	
○ 지역역량강화(S/W)	64,000	35,000	△29,000	
○ 소프트웨어	64,000	35,000	△29,000	
-교육부분	34,000	18,500	△15,500	
-홍보부분	30,000	16,500	△13,500	
○ 부대경비	50,000	60,857	10,857	
-측량 설계비등	50,000	60,857	10,857	

남해군 고시 제2018 - 107호

## 『항촌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해군 남면 항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항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면 선구리 항촌마을
4. 사 업 개 요
  - 지역경관개선
    - 쓰레기집하장 조성 (바지선 1척 7\*10)
    - 항촌 건강 숲 조성 (면적 1,000㎡)
    - 양심쓰레기통 제작 설치 (중형 쓰레기통 6개소)
    - 수려한 전망대 공원 (면적 1,684㎡)
  - 역량강화사업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5. 총 사 업 비 : 498백만 원(국비 348, 지방비 150)

6.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8년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8. 관련자료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부 사업 내역 1부.

기능 별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괄계					증감사유
	예비계획(A)		기본 및 시행계획(B)		증.감(△) (B-A)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b>합 계</b>		<b>498,000</b>		<b>498,000</b>	<b>-</b>	
<b>o 공사비</b>		<b>398,000</b>		<b>378,210</b>	<b>△19,790</b>	
<b>1) 공사비 (순 공사비자재대)</b>		<b>398,000</b>		<b>378,210</b>	<b>△19,790</b>	
<b>◇ 지역경관개선</b>		<b>398,000</b>		<b>378,210</b>	<b>△19,790</b>	
향촌건강숲 조성	건강증진 숲 조성	132,000	휴게테크 4ea 탄성 및 황토포장 A=166m <sup>2</sup>	135,810	3,810	세부설계결과 반영
수려향전망대 공원 조성	휴게공간 조 성	176,000	야외무대 1식 화강석포장외 A=266m <sup>2</sup>	154,540	△21,460	기존잔디마당 활용
쓰레기집하장 조 성	쓰레기집하장 1개소	20,000	해양쓰레기 집 하 장	28,740	8,740	육상에서 해상바지 집하장으로 변경
양심쓰레기통 설 치	쓰레기통 6개소	70,000	양심쓰레기통 5ea	59,120	△10,880	동선 중복으로 수량조 정
<b>o 지역역량강화 (S/W)</b>		<b>50,000</b>		<b>46,000</b>	<b>△4,000</b>	
<b>○ 소프트웨어</b>		<b>50,000</b>		<b>46,000</b>	<b>△4,000</b>	
-교육부분		20,000		18,000	△2,000	행사 및 홍보물비용 조 정
-H/W 운영을 위한 S/W		30,000		28,000	△2,000	행사 및 홍보물비용 조 정
<b>o 부대경비</b>		<b>50,000</b>		<b>73,790</b>	<b>23,790</b>	
-측량설계비등		50,000		73,790	23,790	

사 업 비 수 지 예 산 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계획	기본 및 시행계획	증감액	비고
합 계	498,000	498,000	-	
국 비	348,600	348,600	-	
도 비	44,820	44,820	-	
군 비	104,580	104,580	-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계획 (A)	기본 및 시행계획 (B)	증.감(△) (B-A)	비 고
합 계	498,000	498,000	0	
○ 공사비	398,000	378,210	△19,790	
1) 공사비 자재대	398,000	378,210	△19,790	
◇ 지역경관개선	398,000	378,210	△19,790	
항촌건강숲조성	132,000	135,810	3,810	
수려향전망대공원조성	176,000	154,540	△21,460	
쓰레기집하장조성	20,000	28,740	8,740	
양심쓰레기통설치	70,000	59,120	△10,880	
○ 지역역량강화(S/W)	50,000	46,000	△4,000	
○ 소프트웨어	50,000	46,000	△4,000	
-교육부분	20,000	18,000	△2,000	
-H/W 운영을 위한 S/W	30,000	28,000	△2,000	
○ 부대경비	50,000	73,790	23,790	
-측량 설계비등	50,000	73,790	23,79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757호

공시송달 공고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 2. 위 치 :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6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18. 6. 28. ~ 2018. 7. 12.(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295)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고현면 남치리	산122	산122-1	임	1,091	211	고현면 대사리	박지0				
2	"	166	166-3	전	504	3	고현면 남치리	박한0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760호

### 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공간시설(교통광장)의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9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교통광장)
  - 명칭 : 남해읍 우회도로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 3. 사업의 규모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남해읍 우회도로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교통광장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700m <sup>2</sup>	

-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차산리	779-2	잡	1,051	547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779-6	잡	437	153		국(국토교통부)	-	

남해군 공고 제2018 - 761호

###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05호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창선 진동	100,000	2018.06.29 2028.06.2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신규
남해양식 제506호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미조 항도	100,000	2018.06.29 2028.06.2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신규
남해양식 제507호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창선 서대	100,000	2018.06.29 2028.06.2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신규
남해양식 제508호	패류양식 (가두리식)	전복	창선 진동	90,000	2018.06.29 2028.06.2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신규
남해양식 제50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16,000	2018.06.29 2028.06.2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대체 개발

○ 양식어업권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333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석교	20,000	2008.09.23 2018.09.22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대체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784호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6,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55-860-3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심의회 위원”을 “심의회 위원(이하 ” 위원 “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안건의 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위원의 책무) <u>심의회</u>의 위원은 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p>	<p>제14조(위원의 책무) <u>심의회</u>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p>
<p>&lt;신 설&gt;</p>	<p>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u></li> <li>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li> <li>3. <u>안건의 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u></li> <li>4. <u>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u></li> </ol>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p>

<p><u>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u>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u>제1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u>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787호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범위(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의 대상(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788호

###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의 공개 범위 및 적용 제외 범위(안 제3조)

나.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 용역”이란 남해군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군수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789호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의 입법 형식이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어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폐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7월 3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 자치법규]

남해군 규칙 제1086호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해군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심사 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와 사업내역서(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로 대체한다)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